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고, 현재 196개국이 참여중이다.

체약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내재적 가치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 유전학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및 미학적 가치를 인식하고, 진화와 생물계의 생명유지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가진 중요성을 또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국가는 자신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가는 자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으로 결핍되어 있음과 적절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과학적, 기술적 및 제도적인 능력을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원산지의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소실되는 원인을 예측,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소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고,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계와 천연서식지의 현지 내 보전과 자연환경 속에서의 종의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에 있음을 유의하고, 나아가 현지 외 조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조치는 가급적 원산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의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는 생물자원에 밀접하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의 필

요성을 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부문 간의 국제적, 지역적 및 범세계적 협력 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 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이 생물다양성의 소실을 막기 위한 세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 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을 포함하여 특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의 특별한 사정을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광범위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이 기대됨을 인정하고, 경제, 사회개발 및 빈곤 퇴치가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식량, 건강 및 그 밖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전자원 및 유전기술에의 접근과 공유가 긴요함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함에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강화, 보완할 것을 희망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8조 현지 내 보전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 제도를 수립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내외에 관계없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라. 생태계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한다.
- 마.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 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 바.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 복구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한다.
- 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험을 규제, 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한다.

- 아.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 박멸한다.
- 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차. 국내 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 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 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 카.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한다.
- 타.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 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파. 가호 내지 타호에 규정된 현지 내 보전을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